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다자간매매채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는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로 볼 수 없어 증여추정을 적용하는 주식거래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또는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 법인 주식의 경우 당초 순자산가치의 100%로 평가하던 것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10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평가 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등 고시에 따른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안 제12조)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는 경우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고시되는 경우로 확대함

나.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계산방식 합리화(안 제16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의 영농상속 재산가액 산정시 피상속인

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빼는 것으로 함.

다. 공익법인등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합리화(안 제12조제1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종교사업의 범위를 비영리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사업으로 함

라. 다자간매매채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합리화(안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2항)

1)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대상에서 다자간매매채결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쟁매매 방식의 유가증권 매매를 제외하도록 함

2) 다자간매매채결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쟁매매 방식 외의 유가증권 매매는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을 적용하도록 함

마. 공급망안정화기금·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안 제3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바. 법인의 주식총액 중 주식 또는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 법인에 대한 평가방법 합리화(안 제54조제7항 신설)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또는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 법인 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의 100%로 평가하던 것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10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19.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퇴직”을 “임원(「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으로 퇴직”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 $\times 10 \div 100$)} $\times$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년 이내에”를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여하는 사업”을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액”을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

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영으로 본다.

2.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

제2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간외 시장에서 거래된 것을 제외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채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거래되거나 당일 종가로

거래된 것

제31조의2제3항제1호 중 “6월 1일”을 “6월 1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식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주식등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은 제외한다)

제33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매

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거래된 경우(당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제5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

7.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제38조제17항 중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법 제4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 본문 중 “출연재산가액”을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제2항”으로 한다.

제49조의2제2항제2호나목 중 “3명”을 “8명”으로 한다.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2.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제3항제1호 중 “제3호”를 “같은 조 제7항제1호”로 한다.

제80조제10항 전단 중 “보육사”를 “보육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농상속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3

항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재산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 제54조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		-----		
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		-----		
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		-----		
한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3. -----		
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		가. -----		
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		-----		
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		-----		
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		-----		
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		-----		
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		-----		
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정		-----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		-----		
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		-----		
업의 임원(「법인세법 시		-----		
행령」 제40조제1항에 따		-----		
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		-----		

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생략)

4. ~ 8. (생략)

②·③ (생략)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생략)

②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 10 ÷ 10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③ (생략)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 임원(「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으로 퇴직 --

나. (현행과 같음)

4.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 10 ÷ 100)} ×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 10. (생략)

제16조(영농상속) ① ~ ③ (생략)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

-----.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

-----.

1. -----
--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가 운영하는 사업

2. ~ 10. (현행과 같음)

제16조(영농상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단서 삭제>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 4. (생략)

⑤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1. ~ 4. (현행과 같음)

⑤ -----

-----.

1. -----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가. ~ 사. (생 략)

2. (생 략)

⑥ ~ ⑬ (생 략)

<신 설>

채무액을 뺀 가액

가. ~ 사.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⑥ ~ ⑬ (현행과 같음)

⑭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영으로 본다.

2.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의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

② ~ ⑤ (생략)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u>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간외 시장에서 거래된 것을 제외한다)</u>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 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거래되거나 당일 종가로 거래된 것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 ----- ----- -- 6월 1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
---	--

2. (생략) ④ ~ ⑥ (생략)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2. (생략)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신설> ② · ③ (생략)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삭제 ② 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	<u>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u>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주식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주식등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은 제외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② -----
--	---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
 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
 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재정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
 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③ (생략)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
 위등) ① ~ ④ (생략)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
 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
 래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거래된 경우(당
 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는 제
 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
 위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⑥ (생략)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 ⑩ (생략)

⑪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이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말한다.

⑫ 법 제48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

1. ~ 5. (현행과 같음)

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

7.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 7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48조제2항제1호 -----

-----.

⑫ -----

-----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 -----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계산식 생략)

①9 ~ ②2 (생략)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

-----.

-----.

(계산식 현행과 같음)

①9 ~ ②2 (현행과 같음)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

1. (현행과 같음)

2. -----법 제63조제1항제1
호 및 제65조제2항-----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나. (생략)

3. (생략)

② ~ ⑪ (생략)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생략)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
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
원

가. (생략)

나.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illegible]

가. ·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_____

8명

다. (생략)

③ ~ ⑩ (생략)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 ③ (생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2. (생략)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생략)

⑤ · ⑥ (생략)

<신설>

다.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6.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u>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u> <u>1.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u> <u>2.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u>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 ----. ----- -----.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 ----- 같은 조 제7항제1호---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제80조(가산세 등) ① ~ ④ 삭제	제80조(가산세 등)
⑤ ~ ⑨ (생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료기관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⑪ ~ ⑱ (생략)

⑩

보육사, 어린이집
의 보육교사

⑪ ~ ⑮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11